

성남지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관내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“청년인턴”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
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7일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

1 서류전형 합격자

접수번호	성명 (휴대폰뒷자리)
306	김○○(3797)
308	최○○(6881)
309	김○○(0735)
313	김○○(8802)
315	이○○(9084)
317	박○○(2364)

2 면접시험

☐ 면접일시 및 대기장소

가. 면접일: 2025. 9. 1.(월) 14:00

* 13:45 까지 대기장소 도착

나. 면접대기장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, 5층 고용관리과

3 면접 대상자 유의사항

☐ 면접시험 대상자는 지정된 면접일시를 필히 확인하여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을 지참하신 후 면접전형 세부일정에 지정된 도착시간에 면접대기장소에 도착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(실물신분증 미지참자 응시불가)

☐ 면접대상자 사전 서류제출

가. 제출 서류 목록

- ① **정책제안서 1부(필수제출)【별지1호】**
- ② **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(필수제출)【별지2호】**
- ③ **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 1부(필수제출)【별지3호】**
- ④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나. 제출기한: 2025. 8. 28.(목) 18:00까지(기한엄수)

다. 제출방법: 채용담당자 이메일(yunjiwon@korea.kr)로만 접수(자필 서명 후 스캔(PDF)파일로 제출)

※ 증빙서류 미 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)받을 수 있으며,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
☐ 면접 대상자는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(별도 추가시험 없음)

4 최종 합격자 발표

☐ 2025.9.3.(수) (예정)

○ 성남지청 홈페이지, 나라일터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

☐ 문의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☎ 031-788-1582)

※ 합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

※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별지 1호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청년인턴	성 명		연락처		e-mail	
------	------	-----	--	-----	--	--------	--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-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- 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- 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성명 : (서명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귀하

별지 3호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고용노동부 성남지청	채용방법	공개채용	채용직위(직급)	인턴
	채용사유	경험형 행정인턴채용		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